

자판기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 어떻게 달라지나

개인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 싶다 할 경우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과 자판기를 설치 운영할 만한 로케이션을 가지면 일단 자격요건을 갖추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권리는 영업신고를 통해 해당관청의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 즉 현행 개인운영자들의 핵심운영기종인 온음료자판기 등의 제품은 반드시 해당관청에 영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동시에 4시간씩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타 완제품을 판매하거나 국민의 보건위생과 무방한 내용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이같은 의무조항이 예외가 되지만 운영자들에게 전적으로 자율운영에 맞길 수 없는 식품자판기 품목은 현행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서 그 신고의무와 위생관리, 교육 등의 의무사항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의무규정들은 자판기를 운영하는 운영자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국민의 위생을 담보로 하는 자판기 기종이 이러한 부분에 소홀히 한다면 이는 큰 직무유기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같은 식품위생법상의 의무규정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관련규정들이 많아 자판기 관리운영자들의 큰 불만요인이 되어 왔다.

영업신고서 과다한 서류 제출 요구, 중복신고문제,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위생교육시간 등. 본연의 긍정적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행정 낭비적이고 규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 같은 규정들은 오래 전부터 높은 개선의 당위성이 작용해 왔다.

또한 자판기에 대한 영업신고 의무조항이 운영자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신고자판기율이 신고자판기 비율보다 높아 제대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의식을 느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자판기 운영자의 의무조항들은 그 제도자체의 결함점, 운영자의 적극적인 준법의지 부족 등의 한계상황을 표출하며 본연의 시행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비현실적이고 모순된 관련규정들이 속속들이 개선되거나 보다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어 큰 기대를 머금게 하고 있다. 영업중복신고 체계 개선, 과다서류 제출금지, 위생교육 시간축소 등 운영자들의 입장이 고려된 규제완화

조치가 속속 진행 될 예정이고, 무신고 자판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단속도 병행되어 나갈 전망이다.

협회에서는 지금까지 비현실적이고 모순된 관련규정들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 1~2년 동안은 행정의 비효율성이 작용하는 영업신고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개선 건의를 진행, 산업계가 희망하는 쪽으로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산업계는 앞으로 큰 변화의 물결로 와 닿을 운영자 의무조항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점점 강도가 심해질 지자체의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의무조항 준수와 보다 철저한 자판기의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호에서는 자판기 영업신고와 위생교육에 있어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집중 조명해 보았다.

행정효율 중심으로 크게 개선되는 영업신고 체계

현행 자동판매기 영업신고에 있어 동일건물 및 로케이션에서 다수의 음료자판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각각 해당 영업신고 해야 하도록 한 규정이 앞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체적인 일괄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 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5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기업활동규제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안건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제도 개선』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는 본 협회, 한국코카콜라보틀링, 보광 등이 참석해, 심의위원 및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를 대상으로 현행 관련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 결과 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 중복적인 영업신고체계의 행정낭비적 요인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동일인이 동일건물 또는 인접건물내에 다수의 자판기를 설치하여 운영을 할 경우, 현행 자판기별 개별신고에서 전체 자판기에 대한 일괄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키로 결정했다. 이 결정사항에 대해 관련기관인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에서는 올 하반기 식품위생법 관련규정 개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따라서 자판기 일괄신고로의 개선 시행은 빠르면 올년내 안에 가능하리라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 조치를 특히 자판기를 다량 운영하는 전문운영업체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했던 행정낭비 요인이 크게 줄어 효율적인 영업신고가 가능해 지리라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법정서류외에 기타 서류요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서 각시도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 사항은 이미 협회에서 98년 12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개선건의를 진행해서 결정이 난 사항(98년 1월)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

우가 있는 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행정지도 강화를 식품정책과를 통해 재다짐 받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큰 시행효과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영업신고 개선의 세부사항

1. 영업중복신고의 문제점

- 동일한 건물이나 시설 내에 자판기를 각층별로 설치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영업신고시 첨부서류인 시설배치도 등 관련서류를 중복작성해야 하고 개별 영업신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등도 각각 납부해야 되므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 등 업계의 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 예를들면 동일 건물내에 10대의 자판기를 설치하고 영업신고를 할 경우 10건의 영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2. 영업일괄신고로의 개선 계획

	현행	개선안
영업신고	동일인이 같은 시설 안에서 다수의 자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무조건 개별신고	동일인이 동일건물 또는 인접건물내 (동일번지수)에 다수의 자판기를 설치할 때 전체 자판기를 한 영업신고서에 일괄신고. 단, 이는 건물의 소유주가 같은 경우로 한 건물이라 해도 건물의 소유주가 각기 틀릴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함.
면허세 납부	각 건건별로 개별 징수, 납부	한 영업신고서에 신고된 수량에 따라 일괄징수, 일괄납부

3. 영업신고시 제출서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가 본 협회의 건의를 받아 영업신고시 법정서류 외에 별도서류 및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결정(시정 65407-99. 98년 1월 22일)을 내린 만큼 지자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함.

■ 참고

- 1) 식품위생법상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설비 시설개요서
- 2) 공부확인 서류
-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근거자료 확인을 통해서 조치가 됨
 - 위생교육필증
 - 건축물관리대장
 - 도시설계확인원

4. 신고인의 명의등록 규정개정

영업신고서 법인 영업자 역시도 대표자 개인명으로 신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법인의 명의 등록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본 협회의 별도 개선건의를 받아, 차후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검토하기로 함.

강도는 완화, 내용은 보완이 되는 위생교육

지금까지 위생교육에 대한 운영자들의 불만은 자판기 1~2대를 운영하는데 비해 그 교육 횟수와 시간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점이었다. 즉 일반식품접객업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자판기 운영에 있어 과연 1년에 4시간씩이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실효성적인 측면이 주불만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다보니 식품공업협회에서 진행되는 자판기 위생교육은 운영자들이 마지못해 받는 식의 교육이 되어 버렸고 교육 참석률 또한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특히나 무신고 자판기 운영자들은 자연 위생교육에도 제외가 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어 정상적으로 법을 지켜 가며 영업신고도 하고 위생교육도 받는 운영자들이 오히려 억울하다는 피해의식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위생교육 내용자체도 실질적인 자판기 관리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보다는 일반 식품의 위생관리적인 부분의 내용이 많아 교육효과 역시도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생교육의 문제점들이 앞으로 보다 운영자 중심으로 크게 보완이 되어 나갈 계획이다. 운영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질적으로는 보다 교육내용이 보완되는 방향이 앞으로의 위생교육 체계 변화의 골자이다.

이에 있어선 우선 그동안 운영자들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던 위생교육시간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규영업자 중심으로 크게 완화 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위생교육은 신규, 기존영업자 할 것 없이 1년에 4시간씩 받도록 획일적으로 규정되었으나 지난 98년 10월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영 제7조 제5호 나목(5)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는 3년마다 4시간(신규영업자는 영업신고후 6월이내에 4시간) 받으면 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98년 말에는 개정령(안)이 다시 상정되어 신규영업자만 영업신고후 3개월 이

내에 4시간만 받으면 되는 안이 확정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바 향후 기존업자들은 위생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아울러 위생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식품공업협회와 본협회가 손잡고 보다 교육에 참석한 운영자들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단계적인 보완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1단계 조치로 지난 6월 28일~30일에 걸친 서울지역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교육에 있어 LG산전 서비스팀 서비스 지원파트 한만용씨를 지원강사로 초빙, 온음료자동판매기 관리요령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하루 4시간 교육시간중 1시간을 배정 받아 실시된 이번 교육은 준비시간이 짧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지만 자판기의 세부적인 관리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진행되어 교육에 참여한 운영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본 협회에서는 이번 강의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는 보다 교육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크게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식품공업협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계 자주적인 자판기의 위생관리지침을 만들어 위생교육 교재로도 활용하고 개인운영자들의 자판기 관리의식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할 예정에 있다.

무신고자판기 대대적인 단속

신고자판기보다 더 많은 무신고자판기들. 아이러니컬하게도 자판기 영업신고에 있어서는 무신고 자판기 비율이 신고된 자판기 보다 더 많은 주객전도의 현상을 보여 왔다.

자판기 영업신고가 엄연한 법적인 의무조항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신고율이 낮은 까닭은 무엇보다 무신고자판기에 대한 단속과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손이 부족한 지자체 입장에서 필드에 설치된 무신고자판기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단속과 계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로 작용해 왔다. 설령 단속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영업자 이름과 주소가 명시가 안된 자판기들이 많아 단속의 실효성도 제대로 미치지 못해 왔다.

이렇게 지자체의 단속과 계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자판기 운영자들은 자연 영업신고의 의무조항 준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운영자들은 지자체의 단속력이 미치지 않는 마당에 자판기 한대 운영하는데 굳이 영업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부진한 영업신고율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자판기 영업신고의 의무조항에 대해 기계를 판매한 유통업체가 제대로 이를 주지시키지 않은 요인도 작용한다. 이런 경우 운영자들은 자판기가 영업신고 품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의도치 않은 적법행위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판기 판매시에 있어 영업신고 의무조항이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보다는 오히려 영업신고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자판기 구입을 꺼리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기계판매자 입장에서 마땅히 고지시켜 주어야 할 사항을 일부로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다.

결국 이와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무신고자판기 천국이 되어 버린지가 오래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상적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위생교육을 받는 영업자들이 오히려 피해의식을 느끼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현재의 무신고 자판기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서는 단속과 행정지도라는 극약처방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올해 들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무신고자판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 신고율을 높인다는 취지하에 한국소비자연맹 등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명예감시단을 발족했다.

이 명예감시단은 4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는데 이번 9월까지 무신고자판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행정지도에 나서게 된다. 지난 6월 11일에는 중간 실태조사 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때까지 조사된 9,358대중 78%인 7,341대가 무신고자판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1,999대(21%)는 위생점검표를 자판기에 부착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와 명예식품감시원은 9월 30일까지 무신고자판기에 대한 단속과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그 이후 시점에도 개선이 안될 시는 행정처벌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무신고자판기를 적발시 1차적으로 영업신고를 유도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 래도 조치가 안되면 자판기의 봉인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강력한 단속의지로 인해 이제 무신고자판기들은 신고를 피해 나가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됐다. 이번 9월까지 대대적인 단속과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면 영업신고율이 크게 높아지리라 예상되고 있다.

산업계는 이와 같은 서울시의 실태조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 어차피 자판기 영업신고사항이 현행 법상의 의무조항이면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해 나가는 성숙한 의 식고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운영자를 대상으로 산업계 자체적으로도 적극적인 계몽을 진행, 영업신고율을 높여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영업신고는 어떻게 보면 자판기가 들어 놓는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만약 무신고자판 기가 크나 큰 위생문제를 발생시켰을 시 이는 불법영업행위로 적용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 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다. 이에 비해 등록이 된 자판기들은 그 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처벌강도가 그다지 심하다고는 볼 수 없다.

몇몇한 자판기 기종이 불법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파는 자판기라면 몇몇이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고객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 라 할 것이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처리 요령

본 협회에서는 현재의 부진한 영업신고율이 영업신고처리 및 절차에 대한 홍보가 제 대로 안돼 있는데 1차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처리 요령』

에 대해 계재를 진행하니 영업의식 고취와 운영자 계몽에 있어 요긴한 자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1. 현 황

식품판매업중 다류 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동일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를 하고 면허세도 각각 납부하고 있음.

다만,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제외함.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 자판기	신고제외 자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자동판매기(복합형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판매기내에서 분말커피와 프림, 설탕 등의 원재료와 온수가 혼합되어 판매됨. ○ 콜드컵자동판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판매기 내에서 음료원액과 탄산수가 일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판매됨. ○ 익혀서 가공 처리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식품자동판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캔자동판매기 ○ PET자동판매기 <p>* 이미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어 품질과 위생이 이미 생산과정에서 검증되었고, 자동판매기는 단순히 판매만을 행하기 때문.</p>

2. 신고처리 흐름도

민원인 → 영업신고서작성 →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교부



3. 신고 구비서류

가. 신 규

- 1) 식품위생법상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설비 및 시설개요서
- 2) 공부확인서류

--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근거자료 확인을 통해서 조치가 됨.

- 위생교육필증
- 건축물관리대장
- 도시설계확인원
- * 위생교육필증과 도시설계확인원은 지역에 따라 확인과정 생략을 하기도 함.
- *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쓰고 영업신고후 일정기간이 지나 제출하는 방법도 있음.
- 서약서상 사후 2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았음을 서약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을 감수하겠다고 서약.

3) 추가서류

- 법인의 경우 대표자사진, 주민등록증
- 영업장 사진
- 영업장 상세 위치도
- 법인등기부 등본
- 인감증명
- * 본 협회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식정 65407-99(시행일자 1.22)조치 내용중 영업신고시 법정신고외의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하지 못 할 것이라는 결정에 따라 별도의 추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나. 명의변경

- 영업자지위승계서
- 양도양수서
- 인감증명

다. 신고사양 변경 신고(상호, 소재지)

- 신고증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라. 폐업

- 폐업신고서
- 신고증

4. 수 수 료

- 수입증지 10,000원
- 면 허 세 12,000원
- * 지역에 따라 공채를 사야하는 경우도 있음.

5. 신고처리시 확인사항

가. 서류검토사항

- 1) 신고서의 소재지는 반드시 건물 및 대지의 지번을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참조)
- 2) 임대계약서 및 설치 승락사항 확인
- 3) 수입증지 등 수수료 첨부여부

나. 현장조사시 검토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시설기준 사항 적정 여부
- 비를 피할 수 있는 차양막 시설 여부
- 도로돌출 여부

6. 지도단속시 확인 사항

가. 무신고 영업

- 확인시 청구하여 고발처리(관할 경찰서)

나. 신고영업

- 1)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기준 이행 여부 확인
 - 영업신고번호, 주소, 성명, 고장시 연락처를 아크릴판에 표시 여부
 - 매일 청소 및 청결상태 등 점검후 점검표에 기록유지 여부

7. 현행 영업신고 체계의 문제점

가. 신고관청이 군청, 구청 단위로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는 동사무소가 신고 관청이 되는 경우가 있어 행정혼란을 야기.

나. 일부지역에 있어서는 도로돌출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 영업신고를 하여도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경우도 많아지고 있음

다. 개인운영자의 영업신고에 대한 무지

- 기계를 판매하는 유통업체 및 영업사원이 영업신고에 대한 의무사항과 절차를 알려주지 않고 단지 팔고만 보자는 식의 영업이 많아 개인운영자들이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음.

()영업신고서				처리기간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안내참조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④명칭(상호)		⑤영업의 종류	
	⑥소 재 지	(전화)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수 수 료
년 월 일				신고안내참조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1. 시설배치도			
	2. 제조방법설명서(농어민생산단체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한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공 부 확 인	구 분	일 자	결 과	확인자 서명(서명 또는 인)
	○ 건축물대장등본			
	○ 도시계획확인원			
	○ 교육필증			

※신고안내

(뒷쪽)

제출하는곳	신고관청	처리부서	식 품 위 생 과
수 수 료	1만원	처리기간	특 별 시 : 7일 광역시·도 : 8일 시·군·구 : 5일, 3일(식품소분·판매업과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경우)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를 하여야할 식품영업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운반업 2. 식품소분업 3. 식육판매업 4.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5. 건강보조식품판매업 6. 식용얼음판매업 7. 식품자동판매기영업 8. 유통전문판매업 9. 우유류판매업 10.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식품등 수입판매업 12. 기타식품판매업 1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 		

제 호

영 업 신 고 증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영업소 명칭 :
 소 재 지 :
 영업의 종류 :
 식품의 종류 :
 조 건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인)
 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④영업의종류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⑤소유자또는대표자		
⑥영업소명칭또는상호		
⑦영 업 소 재 지		
⑧시 설 등		
⑨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수 수 료
년 월 일		5,000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신고안내

(뒷쪽)

제출하는곳	신 고 관 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를 하여야할 식품영업의 대상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33%;">1. 식품운반업</td> <td style="width: 33%;">2. 식품소분업</td> <td style="width: 33%;">3. 식용얼음판매업</td> </tr> <tr> <td>4. 식품자동판매기영업</td> <td>5. 유통전문판매업</td> <td>6. 건강보조식품판매업</td> </tr> <tr> <td>7. 식품등 수입판매업</td> <td>8. 기타식품판매업</td> <td>9. 용기·포장류제조업</td> </tr> </table> (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33%;">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td> </tr> </table>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식품운반업	2. 식품소분업	3. 식용얼음판매업	4. 식품자동판매기영업	5. 유통전문판매업	6. 건강보조식품판매업	7. 식품등 수입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용기·포장류제조업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1. 식품운반업	2. 식품소분업	3. 식용얼음판매업									
4. 식품자동판매기영업	5. 유통전문판매업	6. 건강보조식품판매업									
7. 식품등 수입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용기·포장류제조업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